

Deloitte Insights

October 2025



책무구조도 시행 1년,
금융권 내부통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나아갈 길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책무구조도 시행 1년, 전환점에 선 금융권 내부통제	03
새 정부의 기조와 감독당국의 움직임	04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	04
감독당국의 현장 점검 강화: 사각지대 없는 관리 체계	04
내부통제 강화의 현실과 과제	05
경영진 리더십의 중요성과 현장의 과제	05
대표이사의 '총괄관리의무'와 리스크 관리	05
책무구조도의 지속적인 고도화 필요성	05
법제화된 자금 부정 통제, 새로운 내부통제 패러다임의 핵심	06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의 의미	06
자금 사고의 특성과 주요 유형	06
효과적인 자금 부정 통제를 위한 제언	07
지속 가능한 내부통제를 위한 체질 개선 전략	09
실효적 내부통제로 신뢰받는 금융의 미래를 열다	10

책무구조도 시행 1년, 전환점에 선 금융권 내부통제

최근 몇 년간 금융권은 복잡해지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하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의 도입 취지를 제재나 처벌이 아닌 '금융사고 예방'이라고 설명하며, 임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업권별 도입 현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2025년 1월부터 적용을 시작했고, 대형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는 같은 해 7월부터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은 내년 이후 적용 예정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고 도입 준비를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등적 적용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였던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용하려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시행과 시범 운영을 거쳐 일정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예방 효과를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책무구조도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기반은 마련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속적인 개선과 정교화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새 정부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책무구조도는 단순한 예방 장치를 넘어 임원 책임까지 엄격히 묻는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금 부정 통제 법제화는 내부통제의 범위를 기존 재무보고 신뢰성 확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정 방지와 자산 보호까지 확대시키며, 금융기관에는 단순 준법 대응을 넘어 실효적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은 경영진의 인식 부족이나 인적·물적 자원 지원의 미흡으로 인해 제도의 성과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영진의 모범적 리더십(Tone at the Top)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영진의 의지와 자원 지원, 준법 문화의 전사적 확산이 병행되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책무구조도 시행 1년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감독당국의 움직임, 자금 부정 통제 법제화의 함의를 분석한다. 나아가 금융기관이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 실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받는 금융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 정부의 기조와 감독당국의 움직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들이 빠른 속도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그 가운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는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 제도화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고려할 때 책무구조도 관련 정책 이행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책무구조도가 단순한 제도적 장치를 넘어,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책임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법적 근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권에서 반복되는 사고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힘을 실고 있으며, 향후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감독당국의 현장 점검 강화: 사각지대 없는 관리 체계

금융감독원은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내부통제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중 은행



은행권 현장 점검은 작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3~4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8월에는 임원용 매뉴얼 마련, 임원의 6대 관리의무, 대표이사 총괄관리의무 등 개선 요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점검하였다. 아직 임원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제재 사례는 없지만, 금융사고가 지속될 경우 제도의 적용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대형 보험사·금융투자회사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업권에 대해서는 3~6월 동안 시범 운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 준법 점검을 넘어 실질적 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PEF 운용사(GP)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PEF 운용사에 대해서도 연간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가 금융기관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은 책무구조도가 단순한 형식적 제도를 넘어,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 장치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기관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임원 책임 리스크 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시점에 있다.

내부통제 강화의 현실과 과제

새 정부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와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책무구조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그 중요성이 경영 차원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경영진 리더십의 중요성과 현장의 과제

내부통제는 무엇보다도 경영진의 의지와 인식에서 출발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과 컨설팅을 통해 주요 이슈를 전달했음에도, 일부 기관은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물론 회사별 내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은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조직 전반에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데 있다.

은행권은 비교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확대하고, 책무관리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 운영리스크 상담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은행권의 경우 인력과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내부통제를 비용 요소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인력과 자원만 배치해 형식적인 수준에서 대응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이사의 '총괄관리무'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는 단순히 조직 운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법적 책임과도 직결된다.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의 총괄관리무 이행과 관련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내부통제에 필요한 지원을 단순 비용이 아닌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책무구조도의 지속적인 고도화 필요성

책무구조도는 일회성 제출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인사이동, 조직개편, 법규·규제 변경, 신사업 추진, 금융사고 발생 등 다양한 변화 요인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현재의 통제 수준이 해당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내부통제를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과 진화의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는 여전히 경영진 리더십과 인력·예산 배분의 조율 과정에 있다.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핵심 과제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전사적 지원을 확대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책무구조도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를 넘어 금융사고 예방과 신뢰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화된 자금 부정 통제, 새로운 내부통제 패러다임의 핵심

책무구조도 도입과 더불어 금융권 내부통제 환경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자금 부정 통제 활동의 법제화이다. 이는 내부통제의 초점을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넘어 부정 방지 및 자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기업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의 의미

2023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자율 규정이던 자금 부정 통제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보고서에 자금 관련 통제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 조치는 상장 기업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기업의 종속회사까지 적용 범위가 넓다.

이번 법제화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절차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적절한 평가나 보고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형식적인 운영이 기업에 불필요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 기존에 운영실태평가보고서와 감사의견 공시에 더해 자금 부정 대응 활동과 점검 결과까지 공시하도록 한 것은, 자금 부정 방지를 위한 실질적 내부통제 운영에 대해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을 한층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재무보고 리스크뿐 아니라 부정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일부 기업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도를 구축했음에도,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실제 부정 방지나 자산 보호 관점의 정교한 리스크 평가와 통제 활동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금 사과의 특성과 주요 유형

자금 사과는 감사의 고유한 한계로 인해 전통적 절차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렵다. 소액의 오송금이나 착오 송금으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부통제가 취약할 경우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연계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주요 유형으로는 △본인 계좌를 활용하는 계좌이체형 횡령 △가상 거래처를 이용하거나 정상 거래처로 위장하는 거래처관리형 △이벤트를 가장해 고가 매입·매출을 조작하는 단가조작형 △법인카드를 활용한 자금 유용형이 있다. 또한 해외 종속회사에서는 가상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통제 체계도 허점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더라도 자금 흐름과 회계 기록의 일치 여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의 무결성, 해외 종속기업의 이상 징후 감지, 이메일 해킹 대응 등은 별도의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자금 부정 통제를 위한 제언

기업이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는 '진단-개선-모니터링'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질적 리스크 평가

자금 관련 부정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 과거에 발생한 부정 사례나 기업이 속한 산업 및 지역,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 사례 등을 참고해 부정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 위험이 존재할 만한 계정과목을 식별하거나 관련된 부서를 분석하여 부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인(압박/유인, 기회, 합리화 등)을 평가함으로써 기업 내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속회사 범위 재검토

공시 대상 중속회사 범위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중속회사 범위 선정 시, 주로 재무제표 관점에서 양적 지표를 바탕으로 중속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자금 거래 및 자금 부정 리스크에 기반하여 질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제 활동의 내재화

통제 활동의 선택과 집중, 규정과 절차와의 연계를 통한 상시 내재화가 필수적이다. 자금 부정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중요하고 실질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적시 적발이 가능한 유효한 통제인지, 통제가 충분한지를 파악하고, 통제가 규정이나 업무 매뉴얼과 연계되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행될 수 있도록 내재화해야 한다. 또한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시 수준의 적정성 확보

자금 관련 통제 활동 중 공시 대상 통제 활동과 내용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공시 대상 통제 활동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진이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정보 이용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추후 혹여라도 부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의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시의 적정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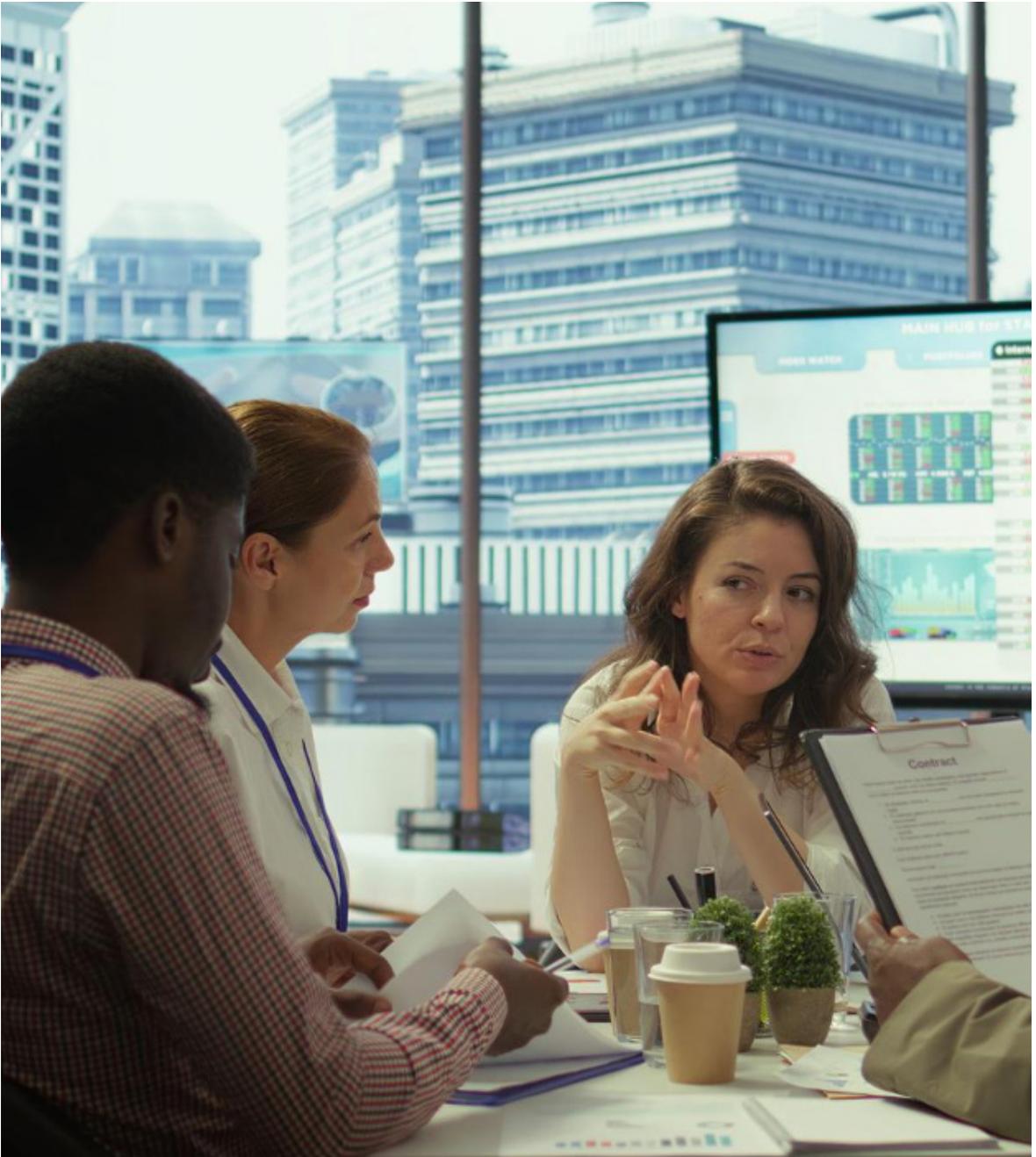


모니터링 체계 정립

부정 행위는 통상적으로 내부통제를 무력화하거나 상대방과의 공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아무리 잘 구축했다 하더라도 부정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통제보다는 부정 행위의 의도를 미연에 차단하는 예방 통제 환경을 잘 구축하여 구성원들이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 또는 불시에 모니터링이 수행된다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조직에 대해 모니터링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 효율적인 모니터링 수단은 익명의 내부고발제도일 것이다. 특히 모회사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해 업무 분장 등 내부통제 환경이 취약한 해외 자회사에서는 익명의 내부고발 제도를 통해 부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경험은 축적되었지만, 익숙함에 따른 형식적 운영 위험도 동시에 존재한다. 최근 제도 변화로 인해 그룹 차원에서 종속회사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자금 부정 위험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심화됐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재무제표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부정 방지와 자산 보호를 포함한 종합적 내부통제 체계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교한 리스크 평가, 유효한 통제 설계, 규정과 업무 절차와의 연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형식적 준법을 넘어 실질적 효용을 발휘하며, 기업의 신뢰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내부통제를 위한 체질 개선 전략

책무구조도 도입과 자금 부정 통제 법제화는 금융권 내부통제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관리와 책임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금융기관은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내부통제를 조직의 체질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모범적 역할

내부통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최고경영진의 인식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영업 성과만큼 내부통제가 강조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기반으로 한 기업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 대상 메시지 전달, 캠페인, 표창·포상·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속적인 책무구조도 관리와 점검

책무구조도는 일회성 문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계속 보완되어야 하는 관리 도구다. 인사이동, 조직개편, 규제 변화, 신사업 추진, 사고 발생 등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즉시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으로 현재의 통제 수준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취약점을 조기에 보완할 수 있다.

전사적 준법 문화 확산과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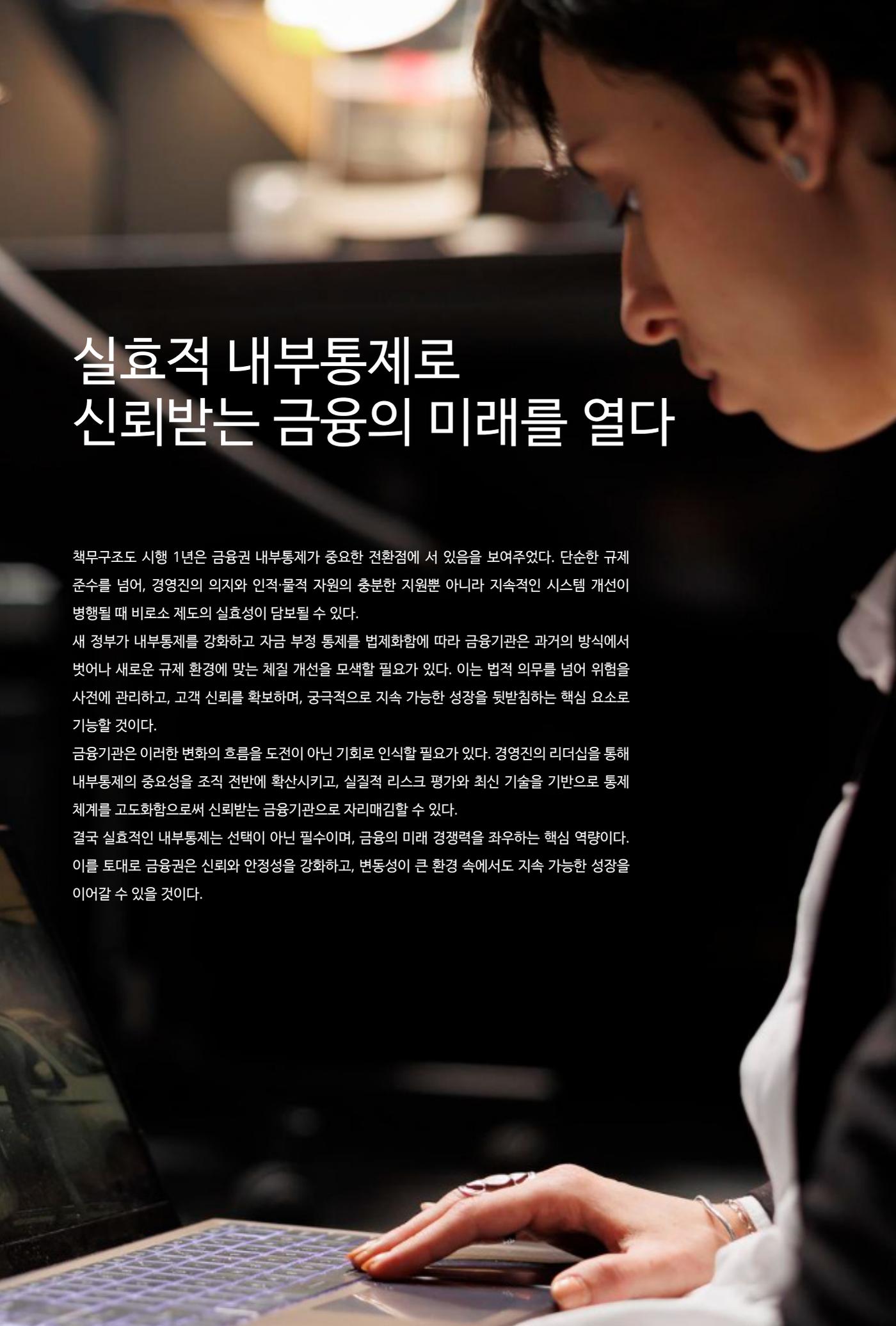
임직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한 규정 준수 교육을 넘어, 각 업무가 내부통제 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이행 시 어떤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 개인의 자율적 준법 의식과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력·예산 확충과 적극적 투자

내부통제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확충뿐 아니라, 책무관리시스템 고도화와 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혁신적 기술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은행권의 선도적 사례는 향후 타 업권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정교한 리스크 평가 기반의 통제 강화

형식적 위험 평가는 형식적 내부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통제가 재무보고 신뢰성뿐 아니라 부정 방지와 자산 보호에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본사가 주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정교한 리스크 평가를 통해 통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를 규정과 매뉴얼에 연계시켜 실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효적 내부통제로 신뢰받는 금융의 미래를 열다

책무구조도 시행 1년은 금융권 내부통제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다.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경영진의 의지와 인적·물적 자원의 충분한 지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새 정부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금 부정 통제를 법제화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는 체질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 의무를 넘어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고객 신뢰를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도전이 아닌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의 리더십을 통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실질적 리스크 평가와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통제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결국 실효적인 내부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금융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은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하고, 변동성이 큰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산업 전문가

내부통제&내부 회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내부 통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회계 제도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해법과 실행 중심의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김선호 파트너

책무구조도 지원센터 | 금융산업부문

☎ 02 6676 1117

@ sunh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내부회계관리제도CoE 센터장

☎ 02 6676 1033

@ hyunjeong@deloitte.com



권대현 파트너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

☎ 02 6676 1327

@ daekwon@deloitte.com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의 전문가들은 은행, 보험, 증권, 캐피탈, 신용카드,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에 대한 축적된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심도 있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특화된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홍기 대표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 02 6676 2319

@ homin@deloitte.com



장형수 파트너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 02 6676 1168

@ hyuchang@deloitte.com



신병오 파트너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 02 6676 1225

@ byoshin@deloitte.com

사업부문별 리더



공선희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리더

☎ 02 6676 1264

@ sgong@deloitte.com



장문보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리더

☎ 02 6676 2319

@ muchang@deloitte.com



염승원 파트너

경영자문 부문 리더

☎ 02 6676 2125

@ syeum@deloitte.com



이동영 파트너

경영자문 부문 리더

☎ 02 6676 2304

@ dongylee@deloitte.com



안상혁 파트너

컨설팅 부문 리더

☎ 02 6676 3625

@ anghyan@deloitte.com



김철 파트너

세무자문 부문 리더

☎ 02 6676 2931

@ cheolkim@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김혜련 Senior Manager
hyery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